

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스포츠센터 운영규정

제 정 2017. 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가 설치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스포츠센터(이하 “솔스포렉스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솔스포렉스를 운영·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사용범위) 솔스포렉스는 본 대학교 학생의 수업과 교직원의 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. 단, 수업과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
2.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기관의 체육행사
3.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체육활동

제4조(조직) ① 솔스포렉스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. 단,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중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솔스포렉스의 장비관리는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행정실에서 담당하며, 시설관리는 총무처 및 시설처에서 담당한다.

제5조(직무)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.

1. 솔스포렉스의 운영계획 수립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솔스포렉스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솔스포렉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제5조(운영) 총장은 솔스포렉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) 솔스포렉스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수영장
2. 헬스장
3. 에어로빅시설
4. 사우나실

제7조(시설사용) 솔스포렉스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재학생의 수업을 위한 사용
2. 각 운동부의 훈련을 위한 사용
3. 본 대학교의 각종 행사 및 교직원 체육활동을 위한 사용
4. 학생들의 자발적 행사 및 연습을 위한 사용
5. 외부 유관기관 행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사용

제8조(사용승인 및 사용료) ① 수업 이외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솔스포렉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센터장은 수업 및 솔스포렉스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.
3. 솔스포렉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대학교 학생 교육 및 실습 이외에 솔스포렉스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력, 냉·난방 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솔스포렉스 시설의 사용료 및 환불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기타) 기타 솔스포렉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